

22. '97年度 骨材受給計劃 樹立

資料提供：建設交通部

- 건설교통부는 '97년도에 소요되는 건설공사용 골재의 수요를 '96년(214,996천 m^3) 보다 3.2% 증가한 221,787천 m^3 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 이에 따르면 전체 골재수요량중 88.9%에 해당하는 197,325천 m^3 는 허가를 받아 공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24,462천 m^3 는 각종 개발사업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골재로 충당하기로 했다.
- 허가공급계획에 따르면 하천골재는 56,905천 m^3 , 바다골재가 53,389천 m^3 , 산림골재가 73,459천, 육상골재가 13,572천 m^3 로서, 부존량이 감소되는 하천골재의 공급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쇄석골재의 수요증가에 따라 산림골재의 공급비율을 확대했다.
 - 즉, 하천골재는 '96년 전체 허가공급량의 33.7%에서 '97년도에는 28.8%로 낮추고, 바다골재 및 육상골재는 전년 수준인 27.1%와 6.9%로, 그리고 산림골재는 29.8%에서 37.2%로 높였다.
- 또한 장기적인 골재수급방안으로 '93년부터 시작한 전국의 골재자 원기초조사('97년 완료)를 토대로 골재부존지역의 채취가능여부를 확인·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I. '96년도 골재수급현황

1. '96 건설경기 동향

- 주거용 건설투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 확충에 따른 토목용 건설

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6.6% 증가.

◦ 건자재 수급은 상반기의 시멘트 수요집중으로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음.

- 건축허가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침체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허가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에 비해 2.0% 감소 예상.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설투자가 2.4% 감소하였으나, 비주거용 및 토목건설투자가 각각 2.6%, 17.0%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6.6% 증가 예상.

(단위 : 천㎡, 10억원)

	'94	'95	'96
건 축 허 가	116,222	117,328	115,000
(증 가 율)	(△1.3)	(1.0)	(△2.0)
주 거 용	63,387	62,614	60,792
(증 가 율)	(△8.5)	(△1.2)	(△2.9)
비 주 거 용	52,835	54,714	54,208
(증 가 율)	(9.0)	(3.5)	(△1.0)
건 설 투 자	50,585	55,596	59,254
(증 가 율)	(4.5)	(9.9)	(6.6)
주 거 용	16,935	18,370	17,924
(증 가 율)	(△0.4)	(8.5)	(△2.4)
비 주 거 용	13,716	15,496	15,896
(증 가 율)	(5.7)	(13.0)	(2.6)
토 목 용	19,934	21,730	25,434
(증 가 율)	(8.1)	(9.0)	(17.0)

2. 전자재 수급동향

- 전자재 수급은 '90년 이후 전자재 생산설비의 증설과 비축기지확충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되었으나, 건설성수기에 수요집중으로 시멘트 부문에서 지역별로 일시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보였음.

〈'96 주요건설자재 수급동향〉

	시멘트(천톤)	레미콘(천m ³)	철근(천톤)
1/4분기 수요	10,477	20,232	2,398
2/4	16,830	36,484	2,402
3/4	14,633	34,995	2,214
4/4	17,560	27,025	2,386
연 간 수 요	59,500	118,736	9,400
생 산 능 력	57,190	281,674	10,200

3. '96 골재수급실적

- '96년도 골재수급은 채취허가의 조기완료와 채취의 활성화로 전반적으로 원활하였음
- '96년중 골재수요량은 214,996천m³이며 그중 '96. 9월까지 66.2%가 공급되었고, 허가공급량은 188,280천m³ 중 51.8%가 공급됨

〈'96 골재수요와 허가공급실적〉

구 분	연 간 수 요	공 급 실 적 ('96. 1~9)	공 급 추 정 량 ('96. 10~12)
'96 수요 추정	214,996천m ³ (100%)	142,326 (66.2)	72,670 (33.8)
허 가 공 급	188,280천m ³ (100%)	97,575 (51.8)	90,705 (48.2)

- 채취원별로 보면 산림골재 허가는 3/4분기에 계획을 초과하였으며, 하천·바다·육상골재도 채취허가가 전반적으로 순조로움.
-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 및 제주지역에서의 골재채취가 활발하였고,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광주·전남지역이 채취실적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음.

〈'96 채취원별 허가·채취실적〉

(단위 : 천㎡, %)

구 분	공급계획(연간)A (비율)	허가실적 (1-9월)B	채취실적 (1-9월)C	B/A	C/A
전 국	188,280(100)	144,902	97,575	76.9	51.8
하천골재	63,365(33.7)	37,314	25,648	58.9	40.5
바다골재	53,363(28.3)	30,098	24,210	56.4	45.4
산림골재	56,094(29.8)	64,108	38,958	141	69.4
육상골재	15,458 (8.2)	13,382	8,759	86.6	56.7

〈'96 지역별 허가·채취실적〉

(단위 : 천㎡, %)

구 분	공급계획(연간)A (비율)	허가실적 (1-9월)B	채취실적 (1-9월)C	B/A	C/A
전 국	188,280(100)	144,902	97,575	76.9	51.8
수 도 권	71,952(38.2)	36,256	32,565	50.4	45.3
강 원	12,670 (6.7)	9,532	6,344	75.2	50.1
충 북	8,844 (4.7)	6,262	5,548	70.8	62.7
대 전 충 남	20,893(11.1)	16,771	12,913	80.3	61.8
전 북	6,875 (3.7)	14,738	3,503	214	50.9
광 주 전 남	19,722(10.5)	12,522	9,260	63.5	46.9
대 구 경 북	19,738(10.5)	25,096	11,612	127	58.8
부 산 경 남	26,483(14.0)	22,848	14,978	86.3	56.5
제 주	1,103 (0.6)	877	852	79.5	77.2

II. '97년도 골재수급계획

1. '97 건설경기 전망

내년도 건설경기는 금년에 이어 계속 약세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97년도 건설경기는 지속적인 약세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건축허가는 금년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건설투자증가율은 금년보다 높은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95	'96	'97
건축허가증가율	1.0%	-2.0%	-1.3%
주 거 용	-1.2	-2.9	-6.5
비주 거 용	3.5	-1.0	4.5
건설투자증가율	9.9%	6.6%	6.9%
주 거 용	8.5	-24	0.6
비주 거 용	13.3	2.8	1.7
토 목 용	9.0	17.0	14.7

2. 건자재 수급전망

- 건설투자증가율이 6~7% 수준에 머무를 경우 시멘트, 철근, 골재 등 건자재 수급과 관련한 전반적인 애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 다만, 계절에 따라 수요의 집중 등으로 인한 일부자재의 수급불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97 주요 건자재 수급전망〉

	시 멘 트	레 미 콘	철 근
수 요 (추 정)	61,000천톤	123,119천m ³	10,060천톤
생 산 능 력	57,800천톤	289,676천m ³	10,800천톤

3. '97 골재수급계획

가. '97년도 골재수요

- 내년도 골재수요는 금년도 보다 3.2% 증가한 221,787천 m^3 (모래 103,574천 m^3 , 자갈 118,213천 m^3)를 나타낼 전망이다.

〈'97 골재 수요전망〉

(단위 : 천 m^3 , %)

구 분	연간(비율)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221,787(100)	40,587	69,419	61,214	50,567
모 래	103,574(46.7)	18,954	32,419	28,586	23,615
자 갈	118,213(53.3)	21,633	37,000	32,628	26,952

- ※추정방법 : 부문별 건설투자 전망치×골재투입 원단위(국토개발연구원)
 건설투자전망 : 국토개발연구원 건설투자전망 및 각 시·도건설투자계획
 골재투입원단위 :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건설투자당 모래, 자갈 투입원 단위 적용

나. 지역별 골재수요 및 허가 공급계획

- 내년도 골재수요 221,787천 m^3 중 197,325천 m^3 를 허가공급하여, 허가공급비율을 88.9%로 제고
- 기타 24,462천 m^3 는 개발사업시 부수적으로 채취되는 골재로 충당

〈'97 골재수요 및 허가·비허가 공급계획〉

골재수요(A)	공 급 계 획		
	허가공급(B)	비허가 공급	비율(B/A)
221,787천 m^3	197,325	24,462	88.9%

- 수도권 등 골재부족지역에 대하여는 인근지역에서 허가량을 늘려서 공급
 - 골재의 자체조달이 부족한 수도권의 골재는 충남권에서 공급
 - 부산·경남, 제주지역의 부족한 골재는 전남권에서 공급

〈'97 지역별 골재수요 및 허가공급계획〉

(단위 : 천³, %)

지 역	골재수요(A) (비율)	공 급 계 획		
		허가공급(B)	비허가공급	비율(B/A)
전 국	221,787(100)	197,325	24,462	88.9
수 도 권	89,602(40.4)	71,526	11,462	79.8
강 원	9,980 (4.5)	9,680	389	97.0
충 북	9,315 (4.2)	9,046	269	97.1
대 전 충 남	25,949(11.7)	24,747	6,720	95.4
전 북	7,984 (3.6)	8,306	685	104
광 주 전 남	12,642 (5.7)	15,846	1,192	125
대 구 경 북	26,836(12.1)	25,836	1,000	96.3
부 산 경 남	37,039(16.7)	30,903	2,650	83.4
제 주	2,440 (1.1)	1,435	95	58.8

다. 채취원별 공급계획

○ 채취원별 허가공급계획

- 부존량이 감소되는 하천골재의 공급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쇄석골재의 수요증가에 따라 산림골재의 공급비율을 높임.

〈'97 채취원별 허가공급계획〉

(단위 : 천³, %)

구 분	'96	'97
	채취량(구성비)	채취량(구성비)
하 천 골 재	63,365(33.7)	56,905(28.8)
바 다 골 재	53,363(28.3)	53,389(27.1)
산 림 골 재	56,094(29.8)	73,459(37.2)
육 상 골 재	15,548 (8.2)	13,572 (6.9)

〈'97 지역별 채취원별 허가공급계획〉

(단위 : 천m³, %)

지역	합계	채취원별공급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
전국 (비율)	197,325 (100.0)	56,905 (28.8)	53,389 (27.1)	73,459 (37.2)	13,572 (6.9)
수도권	71,526	13,031	33,836	23,400	1,259
강원	9,680	3,891	250	2,229	3,310
충북	9,046	3,510	—	4,089	1,447
대전충남	24,747	1,500	11,964	10,183	1,100
전북	8,306	1,040	—	4,923	2,343
광주전남	15,846	983	7,339	5,099	2,425
대구경북	25,836	19,512	—	5,101	1,223
부산경남	30,903	13,438	—	17,240	225
제주	1,435	—	—	1,195	240

※타시도 반입·반출물량은 공급계획상 채취지역 공급량에 포함

라. '97 시·도별 골재수급계획 조정

(단위 : 천m³)

구분	수요	허가공급계획					비허가	반입	반출
		계	하천	바다	산림	육상			
계	221,787	197,325	56,905	53,389	73,459	13,572	24,462	92,876	92,876
서울	38,029	—	—	—	—	—	5,638	32,391	—
인천	7,592	30,236	—	29,536	700	—	—	8,425	31,069
경기	43,981	41,290	13,031	4,300	22,700	1,259	5,824	24,558	27,691
강원	9,980	9,680	3,891	250	2,229	3,310	389	—	89
충북	9,315	9,046	3,510	—	4,089	1,447	269	—	—
대전	7,580	1,210	—	—	1,210	—	220	6,150	—

구분	수요	허가공급계획					비허가	반입	반출
		계	하천	바다	산림	육상			
충남	18,369	23,537	1,500	11,964	8,973	1,100	6,500	1,297	12,965
전북	7,984	8,306	1,040	-	4,923	2,343	685	290	1,297
광주	5,044	1,159	-	-	-	1,159	544	3,341	-
전남	7,598	14,687	983	7,339	5,099	1,266	648	-	7,737
대구	10,590	5,020	4,327	-	693	-	1,000	4,570	-
경북	16,246	10,816	15,185	-	4,408	1,223	-	-	4,570
부산	15,484	4,538	3,134	-	1,404	-	2	10,944	-
경남	21,555	26,365	10,304	-	15,836	225	2,648	-	7,458
제주	2,440	1,435	-	-	1,195	240	95	910	-

※각 시·도에서 수립한 골재수급계획이 시·도 자체수요에 필요한 물량만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전체적으로 수급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에 따라 채취계획을 조정하였음→각 시·도는 본 조정된 계획에 따라 채취예정지 지정 및 허가조치토록 함(단, 허가공급계획량에는 '96년에서 이월된 량이 포함됨).

Ⅲ. 골재수급안정 및 품질관리대책 추진

1. 골재수급 안정대책

○골재의 수급전망

- 내년도 골재수요는 221,787천m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 수요예상보다 3.2% 증가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이 정도의 수요증가율로는 수급상에 문제는 없으나, 수도권외의 경우 원거리에서의 채취(미사리, 양평, 여주), 수송여건의 악화로 수급에 다소 애로요인이 있음.

○대책방안

- 내년 성수기 이전에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허가를 조기완료
- 인천국제공항 및 양산·물금 신도시건설등 대단위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골재수급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강구(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2. 골재채취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골재수급원활화 도모

-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부존량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지정토록 하고 허가기간도 가급적 이에 맞추어 년초의 골재채취 중단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
- 골재채취예정지제도가 폐지된 육상골재의 허가를 지역별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단력적으로 운용

3. 장기적인 수급방안 마련

- 전국의 골재자원기초조사를 '97년까지 완료하고 골재부존지역의 채취가능 여부를 확인
-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고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반영.

〈골재자원기초조사 실적〉

구 분		하천골재	산림골재	바다골재	계
'93	조사권역	충청권	충청권	경기만 북부	
	조사면적(km ²)	401	295	1,800	2,496
	골재부존량(천 m ³)	267,481	212,523	481,950	961,954
'94	조사권역	경상권	경상권	경기만 남부	
	조사면적(km ²)	525	609	2,000	3,134
	골재부존량(천 m ³)	1,245,268	2,124,606	1,989,485	5,359,359
'95	조사권역	수도권	수도권	군산해역	
	조사면적(km ²)	514	170	3,500	3,184
	골재부존량(천 m ³)	186,145	552,357	54,325	792,827
'96	조사권역	전라권	전라권	신안해역	
	조사면적(km ²)	328	379	2,600	3,307
	골재부존량(천 m ³)	조사중	조사중	조사중	조사중

※조사기관 : 한국자원연구소

〈골재자원기초조사 계획〉

구 분		하천골재	산림골재	바다골재	계
'97	조사권역	강원권	강원권	목포 해역	
	조사면적(km ²)	150	222	2,600	2,972

4. 품질관리대책

○ 바다골재 선별·세척업, 골재선별·파쇄업 등록 관리

- 바다모래와 쇠석골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바다골재의 선별·세척을 전문으로 하는 자와 암석·자갈 등의 선별·파쇄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시·도에 등록하여 관리

○ 골재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골재채취법시행규칙 개정 : '96. 2. 5)

- 바다골재는 세척후 유통하도록 하고, 미세척 바다골재를 공급시에는 반출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철저
 - 타법령에 의하여 채취되는 골재를 채취장 외부로 반출코져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반출증에 의하여 반출

5. 환경보호대책 강구

-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골재채취 금지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원으로 부터 상류 5km 이내에서 골재채취시에는 허가전 관할 환경관리청과 협의하여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자연생태계 우수지역,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대상지역등 자연환경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가급적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정지지정 이전에 관할 환경관리청과 협의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골재채취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 복구대책의 사전수립 및 골재채취후 원상복구 철저히 이행

IV. 행정사항

1. 각 시·도는 조정된 '97 시·도별 골재수급계획 물량으로 각 시·군·구의 수급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람(조정된 내용중에는 전년도 이월량이 포함되어 있음).

2. 골재 채취예정지 고시 및 채취허가 조기완료

- 본 계획을 토대로 '97년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고시
- 성수기에 대비하여 '97. 2말까지 대부분의 골재채취허가 조치를 완료하고, 예정지지정 기간과 채취허가기간의 장기화 추진

3. 골재수급관리 및 수송대책 강구

- 골재채취허가 및 채취·반출현황에 대한 통계유지 및 보고철저로 수급불안에 사전대처
- 골재수송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수운수송 강구 및 골재유통단지 개발 등 다각적인 골재수송대책 마련

4. 관련기관 협의철저

- 골재수급을 위한 여건조사, 예정지지정 또는 집중개발시 관련기관(지방국토관리청·환경관리청·군부대 등)이 있을 경우 협의후 시행

5. 기타

- 무등록 및 무허가 골재채취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주택회보